

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금의 설치) 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용한다.

제 3 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.

제 4 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
2. 불우 보훈대상자
3. 재해 이재민
4. 가두 직업 청소년 및 자활단체
5.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
6. 취약지 근무경찰, 군인
7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또는 단체

제 5 조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③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.

제 6 조(지원 기준) 기금은 수혜자의 생활실태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원한다.

제 7 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.

제 8 조(결산보고) 당해년도 기금의 수지에 관한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제 9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